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0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7누399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

A

피고, 항소인 김포시장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6. 5. 13. 선고 2015구합1001 판결

환송전 판결 [redacted]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47460 판결

환 송 판 결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두56790 판결

변 론 종 결 2017. 6. 22.

판 결 선 고 2017. 7. 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08

피고가 2014. 11. 12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.

【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,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.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,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(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두18161 판결,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).】

○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"및 해당 자료들을"을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08

【과 그 첨부서류로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[redacted]고등법원 2013라1408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의 2013. 12. 23.자 결정문,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. 4. 17.자 재결서, 환지예정지 증명원 등을 함께】

○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.

【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'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'는 취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,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, 달리 원고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가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유,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】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08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08

선 정 자 명 단

1. A

2. B

3. C

4. D.

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08

별지 1

과세내역

순번	납세자	과세대상	재산세(원)	지방교육세(원)
1	원고(선정당사자)	I롯트 341.7㎡	2,055,630	271,570
2	선정자 B	I롯트 292.3㎡	1,676,190	215,840
3	선정자 C	L롯트 692.8㎡	4,257,230	568,470
4	선정자 D	I롯트 외 1건, 944㎡	6,236,300	861,670